

#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3150
----------	------

제출년월일 : 2018.04.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안 제6조 및 제7조)
- 안전 심의 및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1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8. 3. 6. ~ 2018. 3. 26.(20일간)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2

방침결정문 : 불임3

##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세무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 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 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 인 자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자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 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가산세 감면신청·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전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고충민원 대상의 지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전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를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 하되, 공휴일 ·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 위원회 심의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 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 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 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 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의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제29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1조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 신청)** 제33조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제33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제33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소 관 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양태호
	담 당 직위.성명	세정팀장 김복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이명종 (행정 2198)